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선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술교류 협약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선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술교류 협약』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신기술이나 선진유지관리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도로교통, 시설안전, 지속가능한 시설환경 등 시민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및 학술적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업무의 범위) 양 기관은 아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상호협력이 가능한 사업 및 연구부분에서 대하여 양자간 교류증진과 협업추진
 - 선진사례 및 학술연구 필요시 실무자 협의체 구성이나 기술자문 운영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기술자문 및 협력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긴급 요청한 기술, 공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연구 시행
2. 신기술이나 신공법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시 완성도가 있는 기술들에 대한 테스트베드(Test Bed) 제공을 통해 연구성과 향상 및 실용화 추진협력
3. 양기관 직원 및 회원 해외연수나 국내방문 등의 기회시 기술세미나 또는 포럼 등을 통해 도로포장,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관한 선진 기술 소개, 정보교류, 기술전파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류확대 추진

제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의무) 양 기관은 안전관리 기술교류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품질 향상에 상호 노력한다.

제5조(협약 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매 3년이 경과되기 이전 상호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3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협약의 효력 등) 이 협약은 협약서에 상호 서명한 날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사항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0월 12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김영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성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선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술교류 협약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선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술교류 협약』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신기술이나 선진유지관리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도로교통, 시설안전, 지속가능한 시설환경 등 시민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및 학술적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업무의 범위) 양 기관은 아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상호협력이 가능한 사업 및 연구부분에서 대하여 양자간 교류증진과 협업추진
 - 선진사례 및 학술연구 필요시 실무자 협의체 구성이나 기술자문 운영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기술자문 및 협력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긴급 요청한 기술, 공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연구 시행
2. 신기술이나 신공법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시 완성도가 있는 기술들에 대한 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해 연구성과 향상 및 실용화 추진협력
3. 양기관 직원 및 회원 해외연수나 국내방문 등의 기회시 기술세미나 또는 포럼 등을 통해 도로포장,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관한 선진 기술 소개, 정보교류, 기술전파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류확대 추진

제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의무) 양 기관은 안전관리 기술교류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품질 향상에 상호 노력한다.

제5조(협약 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매 3년이 경과되기 이전 상호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3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협약의 효력 등) 이 협약은 협약서에 상호 서명한 날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사항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 성 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김영수
